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등〉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9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등	3
2.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 부여	16
IV. 참고자료	22
1. 국내 수도사업 운영형태 및 현황	22
2. 지방상수도 운영형태 및 현황	23
3. 21대 국회 수도사업 통합 관련 주요 쟁점사항	24
4. 지방자치단체 조합 개요 및 현황	25
5. 수도통합 운영 주체별 비교	27
6. 수도사업 통합계획 개요	28
7. 수도사업 통합 효과(경남서부권 사례를 바탕으로)	29
8.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30
9.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 협약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31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5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합리화 등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21호·제2

5호 신설).

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 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②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안 제12조제1항), ③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국가가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8. -----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 ----- ----- -----.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9. -----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 ----- ----- -----

현행	개정안
이 20세제급미터 이상 500세제급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 ----- ----- ----- ----- -----.
10. ~ 20. (생략)	10. ~ 20. (현행과 같음)
<u><신설></u>	<u>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u>
21. ~ 23. (생략)	22. ~ 24. (현행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
<u><신설></u>	<u>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u>
24. ~ 33. (생략)	26. ~ 35. (현행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와 같음)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 -----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⑦ ~ ⑨ (생략)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u>사업자</u>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u>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u>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 ----- ----- ----- ----- <u>사업자, 상수도조합</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 ----- ----- ----- ----- ----- ----- ----- ----- -----. 1. <u>광역상수도 및</u> ----- ----- ----- ----- <u>제외한다</u>): ----

현행	개정안
<u>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u>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2. 삭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u>지방자치단체가</u>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5. (생략) ② ~ ⑤ (생략) 제75조(국고 보조 등) (생략) <u><신설></u>	----- ----- 3. ----- --- <u>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u> <u>조합이</u> ----- ----- ----- 4.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국고 보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국가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현행법상¹⁾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주민과 인근 지자체 또는

1)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음.

[국내 수도사업 체계]



자료: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소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데²⁾,

- 2)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정비계획에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또한,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는³⁾ 국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로, 2023년 말 기준 160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지자체)와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이 중 26개의 지자체는 현행법 제23조에⁴⁾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⁵⁾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고 있음⁵⁾.

그러나 지방상수도의 경우, 160개 지자체 중 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가 124개로 현재 자립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 수도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수질, 유수율, 상수도보급률, 고도처리 비율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3)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하 생략)

5) 수도사업 위탁운영 시 지자체는 수도정책·수도요금 결정, 신규 수도시설 설치 및 마을상수도 관리 등 위탁업무를 감독하고, 위탁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시설 운영관리(생산, 공급), 시설 개선(노후관 교체 등), 검침 및 요금부과,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아 대도시에 비해 더 비싼 수도요금을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 등으로 요금 인상이 어려워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등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수도서비스 및 요금 비교]

구분	특광역시	군
유수율	93.5%	73.5%
상수도보급률	100%	97.5%
고도처리율	63.4%	2.4%
요금(원/m ³)	672.9원	965.6원
생산원가(원/m ³)	817.8원	2,331.2원
요금현실화율	82.3%	41.4%

자료: 환경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2006년부터 환경부 및 관련 학계 차원에서 수도사업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⁶⁾,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도 통합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권역 내 자체 수원이 없어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았던 통영, 사천, 거제, 고성 4개의 경남서부권 지자체에서는

6) 환경부는 2006년 12월 “급수체계조정사업 타당성 검토”, “26개 중권역의 통합관리권역 설정안”을 제시하였고, 2008~2009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였으며(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 2010년 7월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추진계획에서는 공기업위탁, 지방공사, 상수도 조합, 도 직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였음. 추진계획 발표 당시에는 중앙-지자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자율적·점진적 통합,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통합 및 운영 방식 결정을 명시하였음.

광역상수도를 기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수도의 운영통합 및 요금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고, 그 결과 상수도 보급률의 증가, 유수율 향상, 생산원가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⁷⁾.

관련 학계에서 논의된 수도사업 통합 형태는 도 직영, 상수도조합, 지방공사, 전문기관 위탁으로 구분되며, 각 형태에 따른 예산 확보·통제, 직원 신분, 경영 책임, 사업자 지위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수도통합 운영 형태별 비교표]

구 분	도(道) 직영	상수도조합	지방공사	전문기관 위탁
예산 확보	도단위에서 예산편성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예산확보	해당 주주들의 승인 하에 예산 확보	위탁시 보전해야 할 예산은 개별 지자체에서 확보
예산 통제	도지사 및 도의회에 의한 예산통제	조합원 총회 및 의결 기관에 의해 통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의해 통제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통제
직원 신분	공무원(도 소속)	조합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개별 지자체 소속)	공기업 임직원(민간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선택적으로 공기업으로 고용 승계
책임 경영	도지사 책임경영	조합장 책임	공사장 책임	지자체 감독하 공기업사장 책임
사업자 지위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지위 부여 필요	현행법상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한 지자체로 구성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지위 부여 필요	현행법상 운영권만 부여 가능 (소유권 부여 불가)

7) 4개의 지자체 모두 80~90%초반대였던 상수도보급률이 수도사업 통합 이후 99%이상으로 증가했고, 유수율은 약 39.6%p 상승했으며, 누수량이 2,500만³ 감소하여 연간 약 110억원이 절감되었음. 경남서부권 지자체 수도사업 통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7 참조.

구 분	도(道) 직영	상수도조합	지방공사	전문기관 위탁
장점	도 관할 시·군간의 수도서비스 형평성 확보 가능	자율적인 통합 가능	①경영효율성과 공익 성 추구 가능 ②전문인력채용 가 능	초기 재원부담 감소 - 시설개선과 관련 된 사업비 일부를 위 탁공기업에서 선투 자 가능
단점	통합절차 마련을 위 한 법 개정 필요 · 순환보직 유지시 전문성 확보 곤란	지역크기, 인구규모, 재정여건에 따라 합 리적 분담금 산정이 어려움	①공무원 신분전환 불가피, 소요정원 감소 가능성 존재 ②투자재원 부족시 장기 성과달성 어려 움	①공무원 신분전환 불가피, 소요정원 감소 가능성 존재 ②장기계약시 의존 도 심화 가능성 존 재

자료: 환경부

개정안은 수도통합의 한 형태로서 상수도조합의 개념을 명시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 경우 해당 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⁸⁾하고 수도사업을 경영하도록 명시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방상수도의 인가권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상수도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⁹⁾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구성원이 되어 수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임.

지자체간 합의로 상수도조합이 설립되어 수도사업을 경영하게 될 경우, 조합에 소속된 지자체로 구성된 조합회의에서 수도사업 경영 방

8) 개정안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대통령령에서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자에 상수도조합을 포함할 계획임.

9)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4 참조.

식, 수도 요금, 수도시설 설치·운영·관리 등 수도사업 관련 주요 사항이 조합의 규약에서¹⁰⁾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지자체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사무국이 구성됨.

이 경우 수도통합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주민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파견공무원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수도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소속 직원의 신분 변동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 제38조¹¹⁾에 따라 수도요금, 공사의 비용부담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통합 이후 상수도조합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요금 결정¹²⁾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30조¹³⁾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

10)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자체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구성 지자체, 지자체조합의 사무, 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집행기관의 조직·선임방법, 지자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지출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임.

1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 경남서부권 4개 지자체 주민 수도요금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수도급수조례 등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단일화를 달성한 바 있음(참고자료9)

치도·시·군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수도사업 통합으로 도지사,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도사업 통합의 취지는 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상수도 보급률의 증가, 유수율 향상, 생산원가 절감 등 수도서비스의 제고임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 통합”의 정의에 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환경부는 2020년~2022년까지 약 9,895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수질·수량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프라를 전국 지방상수도에 구축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¹⁴⁾을 수행하였음.

13)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0년 2,716억원, 2021년 4,676억원, 2022년 2,503억원이 투입됨.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법」 제74조의4에 따라 설치된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6개 지자체로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보한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22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상수도의 경우 댐-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최종수용가까지 동 공사의 관제 시스템 등을 통한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즉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의 수돗물 공급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실제 그 운영결과 상수도 보급률의 증가, 생산원가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수도사업 위탁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상수도조합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와 같은 위탁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¹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75조제2항의 통합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제75조¹⁶⁾가 수도사업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근거이므로 ‘수도사업 통합’에 대한 별도 지원근거를 신설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실시간 수질, 수량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고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정수장·관망 고도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

15) 현행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상수도조합은 현행법 제23조에 따른 위탁 근거를 적용받지 못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임.

16)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 부여

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관할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고(안 제2조),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①·② (생략)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외한다). 상수도조합은 ----- ----- 한다. ④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현행	개정안
④ ~ ⑥ (생략) <신설>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2조의3(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또한 같다. 1.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의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현행	개정안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수도사업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법에¹⁷⁾ 따르면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해야 하고, 관할 구역의 수

17) 「수도법」 제2조(책무)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사업자(기초지자체)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¹⁸⁾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토대로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에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의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수도사업의 경영 및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별도로 부여된 책무는 없으므로, 지자체의 수도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관할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고, 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18)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도 차원에서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산하 지자체 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2조의3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현행법 체계상 광역지자체인 도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므로 수도경영 기반 구축 의무가 없고 관할 시·군의 수도사업 경영 여건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수도사업 통합계획은 도가 아닌 국가가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현행법상 도지사는 질 좋은 물을 보편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도지사의 수도사업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수도사업 통합계획에는 권역 내 지자체의 수도통합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광역자치단체인 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영합리화 등 수도통합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통합 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3제1항과 같이 환경부에서 수도사업 통합계획 승인시 적극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 수도사업 체계

- (구분) 수도는 크게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되며, 일반수도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로 구분
 - (광역상수도) 국가·지자체·수공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 (지방상수도) 지자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
 - (마을상수도) 지자체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수도

[우리나라 수도사업 체계]



□ 행정구역별 상수도 보급현황(2022 상수도통계 기준)

구 분		총 인구 (천명)	급수인구(천명)		급수보급률(%)	
			마을,소규모포함	지방 및 광역	마을,소규모포함	지방 및 광역
전 국		52,629	52,322	51,456	99.4	97.8
특·광역시		22,510	22,510	22,466	100.0	99.8
시·군 지역	동지역	20,088	20,025	20,006	99.7	99.6
	읍지역	4,518	4,445	4,381	98.4	97.0
	면지역	4,424	4,253	3,685	96.1	83.3
면지역 (농어촌)	전 국	4,652	4,482	3,851	96.3	82.8
	특·광역시	143	143	111	100.0	77.1
	시·군	4,424	4,253	3,685	96.1	83.3

참고2

지방상수도 운영형태 및 현황

□ 지방상수도 운영형태

-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현재 **160개** 지방상수도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이 중 26개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구분	지자체	전문기관
위탁운영 시 주요업무	수도정책 및 수도요금 결정 신규 수도시설 설치 및 마을상수도 관리 등 위탁업무 감독	수도시설 운영관리(생산, 공급) 기존시설 개선(노후관 교체 등) 검침 및 요금부과, 민원처리 등

□ 지방상수도 운영현황

- **(영세규모)** 160개 지자체 중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인 영세한 지자체는 124개(77.6%)로 자립 경영에 한계 존재

* (기재부) 급수인구 30만 이하 지방상수도를 영세 사업자로 규정(노후상수도 타당성용역, '16.9월)

- **(서비스 불균형)** 지자체별 수도사업 여건에 따라 유수율, 급수보급률, 고도처리비율* 등 차이 존재

* ('22년 기준)	특·광역시	군
유수율	93.5%	73.5%
급수보급률	100%	97.5%
고도처리율	63.4%	2.4%

- **(요금 격차)**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징수되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더 비싼 수도요금* 납부 중

* ('22년 기준)	특·광역시	군
요금(원/㎥)	672.9원	965.6원
생산원가(원/㎥)	817.8원	2,331.2원
요금현실화율(%)	82.3%	41.4%

참고3

21대 국회 수도사업 통합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포럼 개최하여 논의('22~'23, 5차례)

① 수도사업 통합 운영형태

- **(운영형태)** 전문기관 위탁, 지방공사, 상수도조합, 도직영
- **(주요쟁점)** 시·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수용성이 높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형태여야 함
- **(논의결과)** '상수도조합(「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시·군으로 구성된 조합회의에서 주요 사항이 결정되고 파견 공무원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수도사업 운영 가능

※ 전문기관 위탁, 지방공사, 도직영 : 시군 자율성 확보 어려움
전문기관 위탁, 지방공사 : 공무원 신분 유지 어려움(민영화 우려 지속)

②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 부여

- **(주요쟁점)** 시군별로 이미 수립 중인 수도정비계획*, 물 수요관리계획** 등에서 수도사업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 수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 시설 계획 위주

** 수도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논의결과)** 수도정비계획, 물 수요관리 계획은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자체간 사업 연계 등을 검토하기 어려움
→ 광역道 차원에서 관할 지역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수도사업 경영상 구조적 문제 파악 및 해결책 모색하는 계획 수립 필요

③ 수도사업 통합 수준

- **(통합수준)** 시설통합, 관리통합, 운영통합, 사업통합 등
- **(주요쟁점)**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통합 수준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함
- **(논의결과)** 통합 수준은 시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

1. 개 요

□ 개 념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법인격)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76조 ~ 제181조

< 지방자치법 제176조 >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구성 및 권한

□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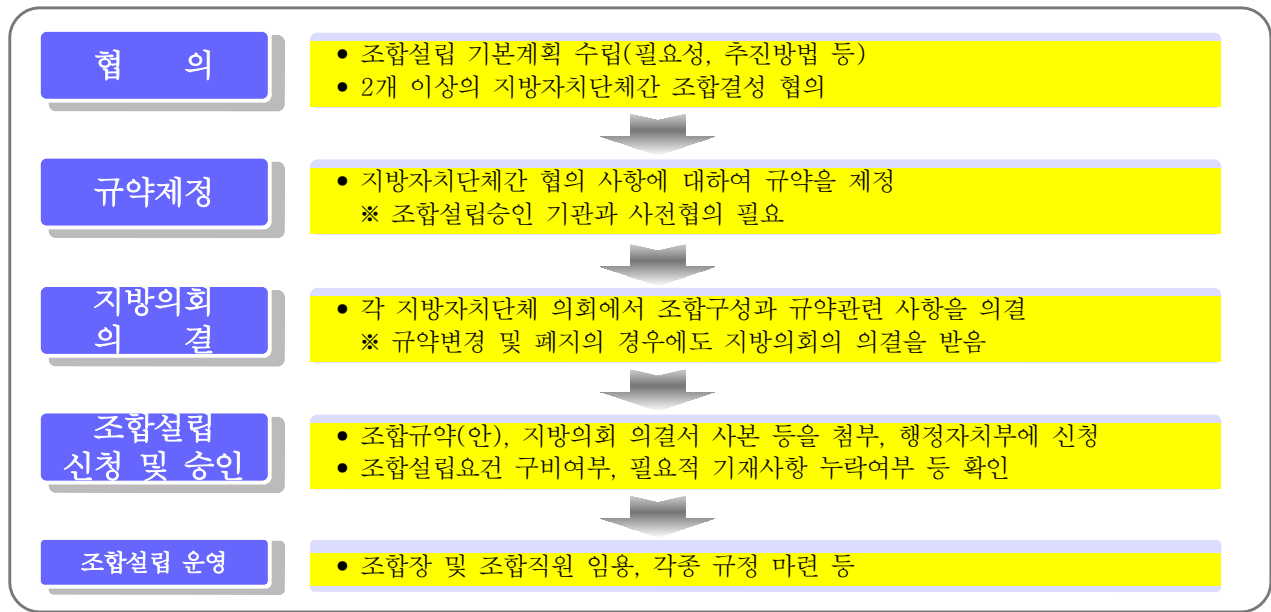
- 조합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 집행기관의 장인 조합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 배치
- 조합회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음

□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징수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총괄

3.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지출방법 등

4.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

명 칭	구 성 원	목 적	승인일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 · 경상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 · 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 1.20
대구 ·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 · 경북도	대구 · 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 · 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8. 6.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 · 장수 · 구례 · 곡성 · 함양 · 산청 · 하동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관광개발사업 공동 추진	'08. 9. 5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6개 시 · 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상생 발전 재원으로 활용	'10. 5. 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 주민자치활동, 쓰레기자 동집하시설 소유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등	'22. 1. 7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91.11.7)'은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

'자치정보화조합('03.1.21)'은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 2.21)

※ (해산) '부산 · 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부산광역시-경남도, '11. 6. 8), '부산 · 김해경량전철조합'(부산광역시-김해시, '11.12.29), 수도권 교통본부(서울-경기-인천, '19.4.19)

참고5

수도통합 운영 주체별 비교

구 분	도(道) 직영	상수도조합	지방공사	공기업위탁
예산 확보	도 단 위 에 서 예산편성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예산확보	해당 주주들의 승인 하에 예산 확보	위탁시 보전해야 할 예산은 개별 지자체에서 확보
예산 통제	도지사 및 도의회에 의한 예산통제	조합원 총회 및 의결기관에 의해 통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의해 통제	각 지자체 및 지방 의 회 에 서 통제
직원 신분	공무원(도 소속)	조합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개별 지자체 소속)	공기업 임직원 (민간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선택적으로 공기업으로 고용 승계
책임 경영	도지사 책임경영	조합장 책임	공사장 책임	지자체 감독하 공기업사장 책임
사업자 지위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지위 부여 필요	현행법상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한 지자체로 구성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지위 부여 필요	현 행 법 상 운영권만 부여 가능 (소유권 부여 불가)
장점	도 관할 시·군간의 수도서비스 형평성 확보 가능	자율적인 통합 가능	경영효율성과 공익성 추구 가능 · 전문 인 력 채 용 가능	초기 재원부담 감소 -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비 일 부 를 위탁 공 기 업 에 서 선투자 가능
단점	통합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필요 · 순 환 보 직 유지시 전문성 확보 곤란	지역크기, 인구규모, 재정여건에 따라 합리적 분담금 산정이 어려움	공무원 신분전환 불가피, 소요정원 감소 가능성 존재 · 투 자 재 원 부족시 장기 성과달성 어려움	공무원 신분전환 불가피, 소요정원 감소 가능성 존재 · 장 기 계 약 시 의존도 심화 가능성 존재

- ☐ (도직영)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별 사무 수정이 불가피하고 도가 의지 없을 시 추진 불가
- ☐ (상수도조합) 지자체별 합리적 분담금 산정 어려움
- ☐ (지방공사) 직원 신분 변화 불가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사가 수행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하위법령 등 개정 필요
- ☐ (공기업위탁) 경영이 아닌 위탁(운영)의 방식에 해당, 경영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위탁운영이 아닌 수도사업 통합 필요

□ 개요

- **(목적)** 통합 운영방식, 경영합리화 방안 등 수도사업 통합전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도사업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수립요건)**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 **(수립주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수립주기)** 필요시 작성

□ 포함내용

-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 수도 공급체계,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 등 수도서비스 현황 분석
-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 수도사업 재정 여건 및 경영성과 분석
 - 경영성과 총괄원가, 요금현실화율
-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 도(道) 직영, 상수도조합, 지방공기업 등 통합운영 방식 제시
 - 운영통합, 조직통합, 시설통합, 요금통합 등 통합범위 제시
-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방안 제시
 - 제시된 방안에 따른 기대효과
-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 수도서비스 개선계획
 - 제시된 개선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7

수도사업 통합 효과(경남서부권 사례를 바탕으로)

□ 경남서부(수자원공사 위탁) : 광역상수도를 기반으로 통합

- (개요) 광역 공급받던 경남서부권 4개 지자체(통영, 사천, 거제, 고성)에 운영통합과 요금 단일화 통해 광역-지방 단계적 통합모델 추진
- (통합사유) 권역 내 자체 수원이 없어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로 수도통합 의사결정 용이
- (한계) 4개 지자체 통합 의사결정 기구가 없어(시설소유권을 각각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음) 사업 통합까지는 한계, 요금도 MOU 체결 후 지자체 각각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통합(가정용 限)

※ 요금감면 지자체에 대해 수공에서 광역요금 감면 중

□ 주요 성과

- (상수도보급율 증가) 수도사업 통합 후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여 미급수지역 급수 실시

계	개별운영	
	급수인구(천명)	보급률(%)
사천	454	86.5
통영	97	86.4
거제	130	92.5
고성	190	88.9

⇒

수도사업 통합 후	
급수인구(천명)	보급률(%)
538	99.0%
111	100.0%
134	100.0%
250	99.9%

- (유수율 향상) 유수율 약 39.6%p 향상하여 누수량 약 25백만 m^3 감소, 연간 약 110억원 절감
- (생산원가 절감) 관리 인력감소, 통합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인건비, 수선교체비, 일반운영비 등 원가 감소

단위 : (원/ m^3)	개별운영	
	수선교체비	일반운영비
사천	1.7	5.4
통영	1.0	1.9
거제	2.1	4.3

⇒

수도사업 통합 후	
수선교체비	일반운영비
0.5	3.9
1.0	1.8
0.8	4.3

참고8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 개요

- (일시) '22. 11. 28(월), 15:00~16:00
- (협약기관) 충청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환경부, 행안부

□ 협약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이하 “시군”)”,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수도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청남도, 시군,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충청남도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통합이행 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발굴 등에 협력한다.
2. 시군은 지방상수도 통합 기반 마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협약 시군 간 통합 추진 등에 협력한다.
3.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사업 발굴 등에 협력한다.
4.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협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당사자는 협약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협약종료를 위한 일방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이 협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체 구성·운영)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기관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8일


충청남도
 도지사 김 태 홍


보령시
 시장 김 동 일


서산시
 시장 이 완 섭


서천군
 군수 김 기 웅


청양군
 군수 김 돈 곤


홍성군
 군수 이 용 록


예산군
 군수 최 재 구


태안군
 군수 가 세 로


환경부
 장관 한 화 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상 민

□ 향후계획

-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 운영('23.上~)
-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통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23.11.14~'24.10.8)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 협약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 추진배경

- 물관리 일원화 실행과제로 **포용적 물이용 체계 마련**이 주요 이슈로 대두
 - * 지방상수도는 161개로 행정구역별로 구분, 지역별 요금체계·물값수준, 서비스 차이
- 지역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요금차이 완화를 위해 **경남서부권 수도 운영통합 시범사업 추진**(사천·고성·통영·거제)
 - * 경남서부권은 '10년부터 수공 운영위탁을 통해 운영시스템 통합 완료(~'19) 후 통합운영 진행중이나, 수도요금은 지자체별 각자 부과해 격차 발생

□ 주요내용

- '21년부터 4개 지자체의 가정용(전체물량 약 65%) 요금 통합 추진
 - *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개선

구간(㎥)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 ~ 10	560	620원	670	620원	620	620원	800	620원
11 ~ 20	710	870원		870원	870	870원		870원
21 ~ 30	880		970			1,390		
31 ~ 40	1,120	1,120원	1,240	1,120원	1,180	1,120원	2,090	2,090원
41 ~ 50	1,480							
51~	1,830							

※ 고성군은 31m³ 이상 구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현행 요금 유지

- 권역 내 수도요금 단일화가 유지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적극 마련(환경부), 광역상수도 물값 일부 감면 추진(수공)

□ 향후 추진계획

- MOU 이행을 위한 **기관별 절차*** 추진('20.11~'21.2), **요금단일화 시행**('21.4~)
 - * (지자체) 급수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동의 추진, (환경부) 국고지원 등 재정·정책 인센티브 검토, (수공) 광역수도 공급규정 개정 추진(4개 지자체 광역수도 요금 감면 등)